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(손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 손명수 · 염태영 · 백혜련

한준호 • 이기헌 • 김영환

부승찬 • 이상식 • 김준혁

권칠승·송옥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·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.

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이 필요하며,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 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다.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,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라.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특례시와 도, 인근 지역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10조).
- 마. 국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- 바. 특례시의 장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 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
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특례시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 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.
 - 2. "도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서 특례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는 도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도의 책무) ① 국가는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입법·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도는 특례시와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④ 도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- 제4조(특례시의 책무)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특례시는 도 및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③ 특례시는 도의 지위 및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 등에 있 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 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 - 2. 특례시의 특례부여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
 - 3. 제10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실시 계획
 - 4. 제10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도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
 - 5. 그 밖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의 의견을 수 렴한 후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 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"지방시대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

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8조(기본계획 등의 심의)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한다.
 - 1.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 - 2.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3. 제12조에 따른 특례부여 요청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사무 특례) 특례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 - 1.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.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 - 2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 구성·기능 및 운영
 - 3. 「건축법」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. 다만,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가. 51층 이상인 건축물(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 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나.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4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의2제2항 제1호, 제4조,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,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,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 경 요청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체 요청 등
- 5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8조부터 제10조까지,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, 제55조, 제57조,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
- 6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, 제53조, 제54조, 제56조, 제58조 및 제58조 의2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·지정취소, 조사·측량, 조성계획의 승인·고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·허가 등에 관한 협의 및 준공검사 등
- 7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

- 8.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
- 9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
- 10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, 제3조의2제1항, 제5조제1항·제3항, 제6조, 제7조의2, 제7조의6제1항·제2항, 제7조의7제1항, 제7조의8제1항·제2항·제4항, 제7조의9,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7까지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 제시, 추진계획 수립,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실적 제출,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,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·지정해제 요청,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·시행 및 재원부담 혐의.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·징수 등
- 1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부 터 제3조의3까지, 제5조, 제12조, 제13조,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・등록갱신・변경등록, 등록증 반납,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와 검사수수료 수납, 영업정지・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 과・징수 등
- 12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3,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, 제26조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44조, 제46조, 제50조의3, 제52조의2, 제52조의3, 제53조,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·지정해제 및 개

발 · 운영 등

- 13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지역물류현황조사
- 14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5조제1항,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시 협의,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 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·제출
- 15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공급 또는 현금 납부 등의 명령
- 16.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5항에 따른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
- 17.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[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(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)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,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]의 절차 및 심사
- 18.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·경계·진압 및 조사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등
- 19.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21조 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 및 승인취

- 소,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청문 등
- 20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6조,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·징수,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·징수 대상자에 대한 보고·검사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등
- 2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6조,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, 사용약관 신고 및 시설 사용료 인 가
- 22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 3조제5항, 제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 및 강화
- 23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,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생 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·징수·환수·반환 등
- 24. 「주택법」 제20조제2항,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,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
- 25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.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6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설 치·운영 및 교육훈련 실시
- 27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

- 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의 책정
- 28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(도 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29. 「하천법」 제8조 및 제84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지방하천 관리 및 폐천부지등의 관리
- 30. 「항만법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·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·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,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·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·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,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·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·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,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,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,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·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(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)의 부과·징수
- 31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관한 의견 제시

- 32.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 선부담금의 부과·징수
- 33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례시의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
- 제10조(영향평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(이하 "영향평가"라 한다) 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례시와 도 및 인근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를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시기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특례시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도는 특례시가 제9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특례부여 요청 등) ① 특례시의 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여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 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

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13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도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를 삭제한다.